

---

# 장기요양기관 분야별 불법행위 사례

---

2016. 12.

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

# 목 차

## 1. 취약한 장기요양시장 구조(제도 분야)

- ① 업무정지시 요양기관 신설·수급자 편법 이전 ..... 1
- ② 수급자 이전 후 휴면기관 방치 ..... 2

## 2. 급여비용 부당청구·본인부담금 불법 감면(공급 분야)

- ③ 친인척을 종사자로 허위등록 등 ..... 3
- ④ 동일재단이 동일 건물에서 요양기관·병원 운영 등 ..... 5
- ⑤ RFID 허위 태그 등 ..... 6
- ⑥ 본인부담금 불법 면제 등 ..... 7

## 3. 수급자 학대 사례(이용 분야)

- ⑦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 시 노인 폭행 ..... 8
- ⑧ 입소자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방치 ..... 9
- ⑨ 부패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보관·사용 ..... 10
- ⑩ 기타 노인학대 사례 ..... 10

# I. 취약한 장기요양시장 구조(제도 분야)

## 사례 1

업무정지시 요양기관 신설·수급자 편법 이전 등 부당청구 12백만원  
 <○○재가요양센터(경북), '16. 3.현장점검, 업무정지 1개월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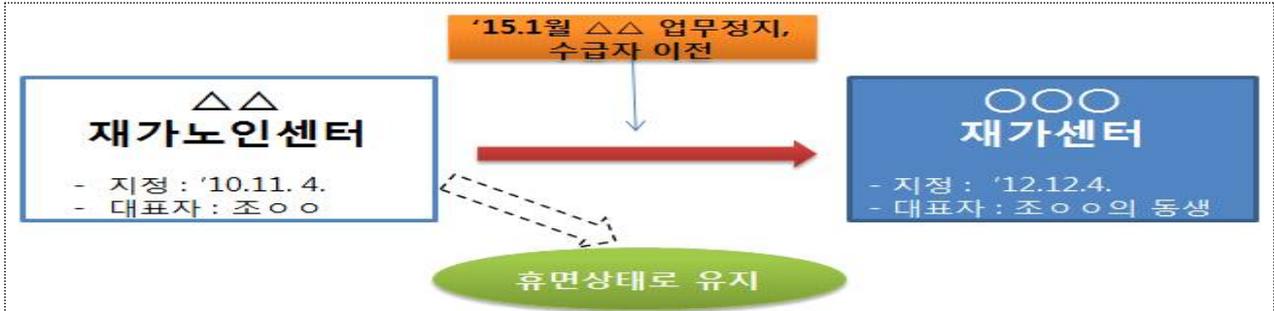
- ① 부인 명의 △△재가노인센터가 업무정지처분 받자 처제 명의 ○○재가센터로 수급자 이전
  - '12.4월 △△재가센터가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처제 명의로 동일 건물에 ○○재가센터를 설립, 수급자 104명을 이전 후 계속 영업
- ② 처제 명의 ○○재가요양센터가 업무정지처분 받자 지인 명의 ◇◇◇재가요양센터로 수급자 다시 이전
  - '14.12월 ○○재가센터가 부당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지인 명의로 ◇◇◇재가센터를 설립, 수급자 94명을 이전 후 계속 영업
  - \* 명의 대여한 지인에게 보상으로 월 50만원 지급
- ③ 지인 명의 ◇◇◇재가요양센터는 처제 명의 ○○재가요양센터의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자 수급자를 ○○재가요양센터로 재차 이전
  - '15.2월 ○○재가요양센터의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자 수급자를 ○○재가센터로 재이전하여 계속 영업, ◇◇◇재가센터는 폐업

□ ○○재가요양센터 전경 : 폐쇄한 △△재가요양센터 명의를 계속 병기



**사례 2**

**수급자 이전 후 휴면기관 방치 등 부당청구 13백만원**  
 <○○○재가센터(경남), '16. 6.현장점검, 업무정지 100일>



- ① **본인 명의 △△재가노인센터 업무정지 후, 바로 옆집에 동생 명의로 설립한 ○○○재가센터로 수급자 이전**
  - 조○○는 본인 명의의 △△재가요양센터가 '15.1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동생 명의로 설립한 ○○○재가요양센터로 수급자 전원(55명)을 이전
- ② **본인 명의 △△재가노인센터는 수급자 없는 휴면상태로 계속 유지**
  - △△재가노인센터는 휴면상태로 동생 명의 ○○○재가요양센터로부터 수급자를 재이전 받아 영업할 가능성 상존
- ③ **본인 명의 △△재가노인센터의 대표자와 딸이 동생 명의 ○○○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급자관리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 지속**
  - 실질 운영자 조○○와 그 딸이 ○○○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으로 수급자 관리를 계속하면서, 요양급여 제공내용 및 기록지를 조작하여 부당청구 지속('15.6~'16.4월)
- ④ **본인부담금 불법 감면 의혹**
  - 동생 명의 ○○○재가센터는 '15.1월~'16.4월 기간중 40여명의 수급자가 본인 부담금 7천만 원을 미납하였는데도 독촉 등 수납노력을 하지 않았고, 이중 6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감면해 준 것을 확인\*
  - \* 다른 요양기관을 이용중인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, 국가유공자(50% 감경 대상)로 면제된다고 속여 유치

□ △△재가요양센터 및 ○○○재가요양센터가 나란히 위치



## II. 급여비용 부당청구 ·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(공급 분야)

사례 3

친인척을 종사자로 허위등록 등 부당청구 32억원  
<○○마을(대전), '16. 8.현장점검, 수사의뢰>

### 3-1. 급여비용 부당청구 주요 내용

- 시설장이 근무하지 않는 딸과 사촌을 요양보호사, 물리치료사로 허위등록
- 요양보호사를 조리원 등 다른 업무에 투입
-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를 동일재단 다른 병원사무원으로 근무토록 함
- 입소자 정원 초과 시 급여비용이 감산되므로 정원초과 사실 미신고

#### ① 근무하지 않는 딸과 사촌을 요양보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허위등록

- 시설장(대표자)인 ○○○은 요양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딸을 요양보호사로 19개월('14.10월~'16.4월)간, 사촌 여동생을 물리치료사로 12개월('11.3~'11.9월, '12.1~'12.7월)간 허위등록하고 요양 급여비용 청구

#### ② 요양보호사를 조리원 등 다른 업무에 투입

- 요양보호사 15명을 조리원(10명), 사무원(2명), 간호조무사(2명), 관리인(1명)으로 총 82개월간('09.10~'10.11월, '11.1~'16.7월) 투입하고 요양 급여비용 청구
- 이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가 부족하자 자격이 없는 조리원(2인) 및 관리인(1인)을 요양보호사로 활용하여 18개월간('15.2~'16.8월 현재) 업무수행

#### ③ 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을 동일재단의 다른 병원에 파견

- 요양기관 소속의 사회복지사 및 작업치료사를 동일재단 소속 병원의 사무원으로 각각 2개월간('16.1~'16.3월) 및 5개월간('16.3 ~ '16.8월 현재) 파견근무 후 요양급여 비용 청구

#### ④ 입소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해야 하나, 정원이 초과된 사실을 숨기고 급여비용 청구(정원 72명/최대 입소인원 80명)

- 요양기관의 입소자 정원이 초과되면 요양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해야 함에도 132명(누계)을 57개월간('09.10~'10.11월, '11.9~'13.11월, '14.4~'15.2월, '16.2~'16.7월)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을 청구

### ③-2. 시설 진입로 및 물리치료실 상태

<진입로>	<물리치료실>
	<p data-bbox="802 293 1054 322">- 홍보 사진(게시판)</p>  <p data-bbox="802 667 954 696">- 실제 상황</p> 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요양원 진입로의 급경사로 입소자의 산책 등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요양원 입구에 있는 진입로는 45도 이상의 급경사로서 입소자의 산책 등 자유로운 활동이 곤란하고,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보행하기 어려운 상태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경우 퇴근시 부상을 우려하여 뒷걸음질로 내려감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물리치료실을 창고로 사용하여 본래의 물리치료 행위 및 이용 불가</li> </ul>	

### ③-3. 곰팡이가 피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도너츠를 냉장고에 보관하던 중 적발

<부패·변색된 도너츠>	
	
<p data-bbox="245 1989 1422 2072">- 도너츠 판매 가게로부터 후원 받은 도너츠(유통기한은 보통 2~3일 정도)를 약 15일간 다른 식재료와 함께 냉장창고에 보관하여 부패 및 곰팡이가 펴</p>	

**사례 4**

**동일재단이 동일건물에서 요양기관·요양병원 동시 운영하면서  
부당청구 19억원 <○○요양원(경기), '16. 5.현장점검, 수사의뢰>**

**<○○요양원 전경>**



- 1층 : 사무실
  - 2~3층 : △△요양병원
  - 4~6층 : ○○요양기관
- \* 동일재단이 동일건물에서 요양기관·요양병원을 동시운영

- **요양병원 간병인을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**
- **요양기관의 물리치료사를 요양병원 물리치료사로도 활용**
- **입소자 정원 초과 시 급여비용이 감산되므로 정원초과 사실 미신고**

**① 요양병원 간병인 등을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**

- △△요양병원 간병인(16명\*)을 ○○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36개월간('13.4~'16.3월) 허위 등록 \* 간병인은 대부분 중국동포로서 협회를 통해 고용
- △△요양병원의 시설관리·업무보조원 3명을 ○○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로 57개월간('11.9~'16.5월) 허위등록

**② ○○요양기관 물리치료사를 동일재단의 △△요양병원 물리치료사로도 활용**

- ○○요양기관의 물리치료사(1명)는 △△요양병원의 물리치료사로 65개월간('11.1~'16.5월) 근무하고서도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

**③ 입소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해야 하나, 정원이 초과된 사실을 숨기고 급여비용 청구(정원 100명/최대 입소인원 106명)**

- ○○요양기관은 정원의 외 입소자 6명을 44개월간('12.9~'16.5월)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청구

사례 5

RFID 허위 태그 등 부당청구 39백만원

<○○○재가노인복지센터(광주), '16. 6.현장점검, 행정처분 진행중>

- 가족이 대신하거나,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RFID 태그 처리
- 요양급여 제공 내용 및 기록지 조작으로 허위청구
-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 의혹

<RFID(무선주파수 정보인식기술) 태그처리>



\*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시점에 스마트폰(리더기)을 수급자 가정에 설치된 태그에 접촉

① 가족이 대신하거나,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RFID 태그 처리

- 수급자인 노모의 아들이 가족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노모와 떨어져 살고 있어 실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누나(동거인)가 동생을 대신하여 35개월간('13.4~'16.2월) RFID 태그 처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
- 요양보호사가 실제로는 방문요양급여 시간동안 소방서 식당으로 출근하였음에도 요양급여 시작(8시) 및 종료(10시) 시간에 맞춰 수급자를 방문하여 12개월간('15.4~'16.3월) RFID 태그만 처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

② 요양급여 제공 내용 및 기록지 조작

- '14.1~'15.9월까지 21개월간 수급자 19명의 요양급여 제공내용 및 기록지를 조작하였으며, 확인란에는 보관 중이던 수급자의 도장을 날인

③ 본인부담금 감면 의혹

- '16. 6월 현재 수급자 66명 중 39명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으며, 이중 26명은 불법감면이 의심되는 상황

**사례 6**

**본인부담금 불법 면제 등 부당청구 115백만원**

<○○노인방문요양센터(서울), '16. 4.현장점검, 행정처분 진행중>

-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으로 수급자 유치 및 사례금 지급
-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소시설이 지정을 받기 전에 수급자를 모집하고 ○○노인방문요양센터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
- 요양보호사에게 요양급여 제공기록 및 기록지 조작 지시

**① 본인부담금 면제 조건으로 수급자 유치 및 사례금 지급**

- '15.1~12월 기간 중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으로 수급자 3명을 유치하였으며,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15만원의 사례금도 지급

\* 실질 운영자인 김○○(대표자의 모)는 요양보호사가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도록 지시

**② 미지정 입소시설에 수급자를 유치하고 ○○노인방문요양센터 명의로 급여비용 청구**

- ○○노인방문요양센터의 실질운영자인 김○○(대표자의 모)는 본인 명의 입소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이전인 '14.9~12월까지 수급자 3명을 입소시킨 후, ○○노인방문요양센터 명의로 급여비용을 청구

**③ 요양보호사에게 요양급여 제공내용 및 기록지 조작 지시**

- '14.9~'16.3월 기간 중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19명의 요양급여 제공 내용 및 기록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상습적으로 허위.과다 청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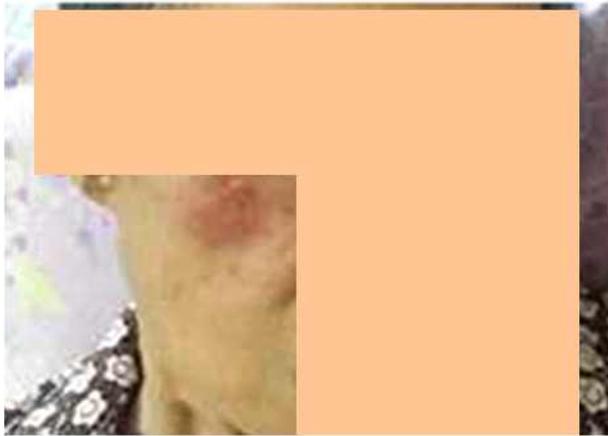
### III. 수급자 학대 사례(이용 분야)

사례 7

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 시 노인 폭행

<○○○○요양원(전북), '16. 7.현장점검, 수사의뢰>

피해노인①-얼굴에 난 상처



피해노인②-종아리에 난 멍자국



피해노인③-팔에 난 멍자국



피해노인④-다리에 난 멍자국



- 피해노인,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과 신체에서 발견된 폭행정황을 조사한 결과 시설 대표자의 아내가 야간근무 중에 입소노인 4명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, CCTV 등 직접증거가 없으며 가해자도 폭행사실을 부인
- 노보는 피해자 등의 진술과 폭행 정황자료를 바탕으로 신체적 학대로 판정하고, 가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

**사례 8**

**입소자 방문을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우는 등 방치**  
<○○○노인요양원(전북), '16. 6.현장점검, 업무정지 3개월>

**① 현장조사 당시 끈으로 묶여 있는 노인 숙소 및 내부에 바지가 벗겨진 채 바닥에 방치된 노인**



- 원장 및 부원장(부부사이)이 야간 당직 근무자로 편성되어 있으나 6.15. 현장 점검시 노인이 있는 방 입구를 끈으로 묶어 놓고 시설을 비운 상태\*였으며, 방 내부에서 노인이 바지가 벗겨진 채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

\* 원장 및 부원장은 농사 및 외부 모임으로 시설을 비운 것으로 확인

**② 치매 입소노인이 혼자 마을을 배회하는 모습(마을 CCTV 확인)**



- 시설주변 마을 CCTV로 6.11.~6.16.(6일) 기간을 살펴본 결과, 6.13. 치매노인이 혼자 시설 주변을 배회하도록 방임한 사례도 발견

**사례 9**

**부패 및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 등 보관·사용**

<○○원(서울), '16. 9.현장점검, 과태료 부과>

**① 부패한 무짬지와 곰팡이 핀 고추장아찌**



**② 유통기한 4개월 경과한 쌀떡**



**③ 조작된 자체 점검표 (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이 없다고 표시)**

**위생 점검 일지**

구분	세부점검사항	점검사항							
		8/17	8/18	8/19	8/20	8/21	8/22	8/23	8/24
식당	바닥, 휴지통 청결상태	○	*	○	○	○	○	○	○
	식탁 청결상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냉장대 청결상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상수도 청결상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조리실	바닥 청결상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조리대, 기계의 청결 및 청돈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식기 보관소 청결상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드레싱 세척 및 소독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필크대 청결상태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	○	*	○	○	○	○	○	○
식품	원 재료의 유통기한 (생선,야채 등)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조리 후 식품 보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매식 시 식품보관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	식품의 유통기한 확인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
발동	물품의 정리	○	*	○	○	○	○	○	○
냉장고	바닥의 청결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
- ○○원은 부패한 무짬지, 곰팡이 핀 고추장아찌와 유통기한이 4~5개월 경과한 흰떡 등을 보관하고 식재료로 사용

- 자체점검표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고 보관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

**사례 10**

**기타 노인학대 사례**

**① 노인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고 폭행 등**

<○○○너싱홈(경기), '16. 6.현장점검, 업무정지 6개월>

- 요양보호사는 당일 입소한 노인이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휠체어를 태워달라고 하자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리스와 식판을 노인에게 던지는 등 학대('16.9월 가해자 기소)

- 요양보호사는 여러 명의 수급자가 생활하는 침실에서 방문만 단으면 외부에서 방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노인들의 거부도 없다는 이유로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채 기저귀를 교체

② 입소자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치료비로 사용

<○○노인전문요양원(경남), '16. 3.현장점검, 개선명령>

- ○○노인전문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체위를 무리하게 변경하다 팔 골절상을 입히고서도 피해노인의 수술비 30만원을 피해자가 무연고자인 점을 악용하여 피해노인의 개인연금 통장에서 지출